

규 칙 안 심 사 보 고 서



의회운영위원회

[전문위원 박 성 근]

목 차

- 1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-

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/발의자 : 2023. 02. 27. / 김홍섭의원 대표발의
- 나. 회부일자 : 2023. 02. 27.
- 다. 상정일자 : 제269회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(03.09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김홍섭 의원)

- 실제 출장 사유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칙의 적용 범위를 실수요에 맞도록 개정하여 출장의 목적 및 근거를 명확히 하고 내실 있는 출장제도를 운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이 규칙을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 범위확대(안 제2조)
 - 1) 현행: 거창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
 - 2) 변경: 중앙정부, 거창군수,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장 또는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

- 연임제한 신설(안 제4조)
- 용어순화, 인용 조례명칭 등 정비(안 제4조·제6조·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52조
-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집행부의견조회 : 해당사항 없음
- 입법예고 : 해당사항 없음
-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-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박성근)

- 본 규칙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52조에 따라 지방의회 내부 운영에 관한 부분을 규칙에 반영하는 것으로
- 일반적인 규칙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 : 없음

8. 수정안 요지 : 없음

9. **심사결과 : 원안 가결**

10. **소수의견 요지 : 없음**

11. **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